

조문별 제정이유서

1. 목적 (안 제1조)

가. 제정 이유

- 이 영이 「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임을 밝혀, 이 영의 규율 범위와 모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이 영의 목적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음을 명시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이 영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집행명령임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

마.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범위 (안 제2조)

가. 제정 이유

-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서 13개 산업군을 열거하고, 하목에서 “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산업에 준하는 산업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,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호) 「선박관리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을 추가함
 - 북극항로 운항선박의 기술적·상업적 관리 및 선박시운전 등은 극지 운항의 필수적 지원 기능으로서, 가목의 해운·항만·물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산업으로 인정됨
- (제2호)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산업을 추가함
 - 법 제5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는 기본계획에 도시개발·도시재생·교통망 확충 및 항만배후단지·물류단지·산업단지의 조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,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건설산업은 연관산업 기반 조성 측면에서 실질적 연관성이 인정됨
- (제3호)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을 추가함
 - 극지 대응 항만·플랜트·선박에 관한 타당성 조사, 설계, 감리 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, 바목의 조선·플랜트 관련 산업 및 선박부품·기자재 관련 산업에 준함
- (제4호) 「원자력진흥법」에 따른 원자력 관련 산업을 추가함
 - 극지 항해용 선박의 추진체계 및 북극권 에너지 개발과 연계되는 산업으로서, 아목의 해외자원의 개발·수입 관련 산업 및 에너지 공급 관련 산업에 준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법률이 열거하지 못한 산업 중 북극항로 활용·운항 지원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산업을 포함하여, 기본계획·실행계획 및 지원시책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북극항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

마. 참고사항

○ 관련 법령

법령명	조문
선박관리산업발전법	제2조(정의) 1 “선박관리산업”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,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, 관공선 운항자, 조선소, 해상구조물 운영자, 그 밖의 「선원법」상의 선박소유자(이하 “선박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기술적·상업적 선박관리,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(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)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.
건설산업기본법	제2조(정의) 1 “건설산업”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.
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	제2조(정의) 2 “엔지니어링산업”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원자력 진흥법	제2조(정의) 1 “원자력”(原子力)이란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.
원자력안전법	제2조(정의) 1 “원자력”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.

3. 기본계획의 수립 등 (안 제3조)

가. 제정 이유

-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계획 운용의 신축성이 저해되므로,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“경미한 변경”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
- 아울러 법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정 기재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항)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을 3가지 유형으로 한정함
 - (제1호) 계획의 기본 방향·전략·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·추진일정·주관기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
 - (제2호) 단순한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
 - (제3호)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른 반영 변경
- (제2항)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사항을 3가지로 규정함
 - (제1호)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 :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정보플랫폼 구축 업무와 기본계획을 연계함
 - (제2호)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사항 :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계획 수립·평가에 축적·활용되도록 함
 - (제3호) 북극항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: 법 제11조 이하의 지원시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계획 단계에서 다루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 입법효과

- 심의가 필요한 실질적 변경과 그렇지 않은 경미한 변경이 구분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됨
- 정보·통계·제도개선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계획의 집행 기반이 강화됨

마 참고사항

- 유사 입법례

법령명	조문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	제3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기본 방향,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, 추진일정,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3. 단순한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.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

4.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
가. 제정 이유

- 법 제5조제5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 의무만 부과하고 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, 매년 반복되는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정형화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항)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
 - 실행계획의 이행 과제가 다수 부처에 걸쳐 있으므로 협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함
- (제2항) 실행계획의 확정 시한을 매년 3월 31일로 정함
 - 해당 연도의 예산 집행 및 사업 착수 시기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- (제3항) 확정된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
 -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이 실행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보 대상에 포함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실행계획의 수립 주체·절차·시한이 명확해져 계획의 안정적·주기적 수립과 운영이 가능해짐

마. 참고사항

○ 유사 입법례

법령명	조문
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	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.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5. 실태조사의 범위 등 (안 제5조)

가. 제정 이유

- 실태조사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- 법 제6조제2항이 관계 기관·북극항로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·의견진술 협조 요청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, 협조 요청의 대상이 예측 가능하도록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항) 실태조사의 범위를 시장·제도·인프라·운항실적·연구개발·전문인력의 6개 영역과 보충 규정으로 정함
 - 법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본계획 기재사항과 대응되도록 조사 영역을 설계하여, 조사 결과가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
- (제2항) 조사 방법을 현지조사, 문헌조사,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함
 - 조사 대상의 성격에 따라 조사 방법을 신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
- (제3항) 법 제14조에 따른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·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 - 북극항로 연관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조사 범위와 방법이 명확해져 실태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조사 대상자의 수용성이 높아짐
- 전문기관 의뢰 근거 마련으로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됨

마. 참고사항

- 유사 입법례

법령명	조문
남극활동 및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	제27조의2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·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남극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개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	제3조(실태조사)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
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	제6조(실태조사)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6. 지역별 육성전략 (안 제6조)

가. 제정 이유

- 법 제7조제2항제1호는 육성전략에 포함할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일부(법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)를 준용하고 있어 이를 보충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호·제2호) 육성전략의 목표·기본 방향과 지역적 여건·현황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여,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라는 법 제7조제1항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함
- (제3호)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정합성 검토를 포함하도록 함
 - 육성전략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하위 전략이므로 계획 간 정합성 확인 절차가 필요함
- (제4호) 추진 일정 및 추진체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략의 이행 가능성을 담보함
- (제5호)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
 - 북극항로 연관산업은 항만·배후단지·산업단지 등 광역적 기반을 전제로 하므로 단일 지역 단위의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육성전략이 계획 문서로서의 형식적·내용적 완결성을 갖추게 되고, 기본계획·실행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됨

마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북극항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(안 제7조)

가. 제정 이유

- 법 제8조는 북극항로위원회의 설치·심의사항·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위원장의 직무, 직무대행, 회의 소집 절차, 위촉위원의 해촉, 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항·제2항)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자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도록 하여 심의 공백을 방지함
- (제3항)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·장소·안건을 통보하도록 하되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함
- (제4항)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5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함
- (제5항) 위원 등에 대한 수당·여비 지급 근거를 두되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함
- (제6항)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운영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
 - 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운영규정 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

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 입법효과

- 위원회 운영의 기본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심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됨

마. 참고사항

- 유사 입법례

법령명	조문
국토기본법 시행령	제12조(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.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	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④ 위원회의 위원, …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8.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 (안 제8조)

가. 제정 이유

-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·육성전략 등 북극항로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하므로, 심의·의결의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항) 위원 본인·배우자의 당사자 지위, 친족관계,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·자문·용역 등 수행, 당사자의 대리인 지위를 제척 사유로 한정 열거함
- (제2항)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되,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
- (제3항)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과 대외적 신뢰가 제고됨

마.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9.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(안 제9조)

가. 제정 이유

- 법 제9조제1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(해양수산부차관)만 정하고 있으므로, 실무위원회의 규모·위원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- 아울러 법 제9조제2항이 실무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의제하고 있으므로, 그 대상이 되는 “경미한 사항”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항·제2항) 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함
 - 당연직 위원은 북극항로위원회 당연직 위원 부처 중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담보함
 - 위촉위원은 북극항로 관련 기술·경제·사회·국제협력 분야로 특정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함
- (제3항)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, 신분의 안정성과 위원 구성의 순환 가능성을 함께 확보함
- (제4항)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·의견 제출 요청 및 관계자 출석 근거를 마련함
 -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검토·조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임
- (제5항)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함
- (제6항) “경미한 사항”을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으로 한정함
- (제7항)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되, 준용에 따른 용어의 치환 관계를 명시함

- “위원회”→“실무위원회”, “위원장”→“실무위원회의 위원장”, “법 제8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”→“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”으로 각각 치환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함

마. 참고사항

- 유사 입법례

법령명	조문
물관리기본법 시행령	제9조(물관리위원회의 운영)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연구기관,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0. 북극항로추진본부 (안 제10조)

가. 제정 이유

- 종전에 국무총리훈령(「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, 국무총리훈령 제902호, 2025. 11. 26. 제정·시행)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되던 북극항로추진본부의 설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, 그 구성과 지휘·감독 관계 등 기본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항) 추진본부를 본부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조직의 기본 골격을 정함
- (제2항) 본부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도록 함
- (제3항)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위 규범에 위임함
 - 정원·분장사무 등은 조직 운영의 신축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하위 규범에 위임하되,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직의 기본 골격과 본부장의 직무를 직접 규정하여 백지위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률에 근거를 둔 조직으로서 추진본부의 위상과 지휘 체계가 명확해지고, 조직 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됨

마. 참고사항

○ 유사 입법례

법령명	조문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	제12조(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) ③ 추진단 단장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

11.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(안 제11조)

가. 제정 이유

-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 외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보충적 사업 유형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호) 북극항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- 극지 운항 및 연관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·보급하도록 함
- (제2호)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운영 현황 점검
 - 양성사업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함
- (제3호)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의 협력
 - 극지 항해 관련 교육은 국제적 기준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함
- (제4호)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유형이 구체화되어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 근거가 명확해짐

마. 참고사항

- 유사 입법례

법령명	조문
극지활동진흥법 시행령	제5조(전문인력 양성 시책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·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

12.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(안 제12조)

가. 제정 이유

- 법 제14조제1항은 “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”라는 추상적 요건만 정하고 있으므로, 지정 대상 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규정하여 지정 행위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
- 아울러 법정 업무 외에 센터가 수행할 업무와 지정취소 사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항) 지정 대상 기관을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와,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·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함
 - 북극항로 운항 지원 등 업무의 성격상 우선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제1호로 규정하되, 향후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2호에서 추가 규정함
- (제2항)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을 전담조직·전문인력·전문성의 3가지로 규정함
- (제3항) 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
 - 이해관계인이 센터의 지위와 그 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
- (제4항)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센터가 수행할 업무로 기술적·행정적 지원,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을 추가함
- (제5항) 센터의 장이 공공기관·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 - 센터 업무가 다수 기관·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한 것임
- (제6항) 지정취소 사유를 업무 수행 불능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불이행으로 한정함

- (제7항) 그 밖에 센터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센터 지정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 지정 행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, 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위 변동이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

마. 참고사항

- 유사 입법례

법령명	조문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	제9조(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한다. 1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	제90조의3(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…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.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.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. …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것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	제21조(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…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3. 업무의 위탁 (안 제13조)

가. 제정 이유

- 법 제16조제2항이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업무 일부를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범위와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, 위탁 대상 업무와 수탁 기관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(제1항) 위탁 대상 업무를 법 제12조에 따른 연구·개발,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,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으로 한정함
- (제2항) 수탁 가능 기관을 공공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,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,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·단체로 정함
 -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 유형으로 특정하여 수탁자의 적격성을 담보하고, 제6호의 경우 지정·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별 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함
- (제3항)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전문기관 활용을 통하여 연구·개발, 인력 양성, 국제협력사업의 집행 효율성이 제고되고, 위탁 사실의 고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됨

마. 참고사항

- 유사 입법례

법령명	조문
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	제10조(업무의 위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.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	제19조(업무의 위탁)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·법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해양 또는 기후 관련 학과·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

14. 시행일 (안 부칙)

가. 제정 이유

- 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이 영의 시행일을 정하되, 법 시행 전에 시행되는 법 제8조(북극항로위원회)에 대응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

나. 제정 내용

- 이 영의 시행일을 법의 일반 시행일인 2026년 12월 17일로 정함
- 다만, 제7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및 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모법과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일치하고, 법 시행 전 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가 확보됨

마.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